



제 43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에 대한 집행관리 강화〉  
■ 이철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80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에 대한 집행관리 강화 ..... | 2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철규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26.
3. 회부연월일 : 2026. 2. 27.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금·보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술혁신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자의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최근 5년간 돌려받지 못한 정산회수금은 245억 원에 이르고 있어, 출연금·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출연금·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출연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수계획의 수립·시행 및 정기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 Ⅲ. 검토의견

#### 1.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에 대한 집행관리 강화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을 지급 받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집행기준 및 정산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출연금·보조금의 집행 또는 정산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급방식의 조정 및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중소기업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출연금·보조금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의2제3항 신설), 출연금·보조금의 집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혁신사업의 수행기간 중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5항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제10조의2(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의 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출연금·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정산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의 집행 또는 정산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보조금 지급방식</p> |

| 현행                               | 개정안                                                                                                                                                                                                                                                                                                                                                                                                                                                     |
|----------------------------------|---------------------------------------------------------------------------------------------------------------------------------------------------------------------------------------------------------------------------------------------------------------------------------------------------------------------------------------------------------------------------------------------------------------------------------------------------------|
| 제10조의2(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생략) | <p>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출연금·보조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자의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연금·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출연금·보조금의 집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의 수행기간 중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10조의3(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현행 제10조의2와 같음)</p>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026년 기준 2조 1,958억원 규모의 R&D 사업을 진행중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R&D 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되면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

나, 연구개발협약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되는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연구개발비를 환수하고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sup>1)</sup>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종료된 중소벤처기업부 R&D 과제 중 2025년 말까지 정산금이 미반납된 과제 건수는 총 655건으로, 미반납액은 314억 3,500만원으로 확인되고,

[표 1] 2020~2024년 R&D 종료과제의 연도별 정산금 미반납액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br>(사업코드)                | 종료연도별 정산금 미반납액 |    |       |    |       |    |       |    |       |     |        |     |
|--------------------------------|----------------|----|-------|----|-------|----|-------|----|-------|-----|--------|-----|
|                                | 2020년          |    | 2021년 |    | 2022년 |    | 2023년 |    | 2024년 |     | 합계     |     |
|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 산학연협력기술개발<br>(R&D)(2151-301)   | 294            | 6  | -     | -  | -     | -  | -     | -  | -     | -   | 294    | 6   |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br>(R&D)(2134-303) | 242            | 3  | 818   | 16 | 1,029 | 20 | 1,600 | 22 | 4,933 | 41  | 8,622  | 102 |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br>(R&D)(2134-302)  | 219            | 2  | 90    | 5  | 1,350 | 15 | 968   | 16 | 2,739 | 45  | 5,366  | 83  |
| 창업성장기술개발<br>(R&D)(2134-309)    | 267            | 14 | 809   | 33 | 1,352 | 38 | 2,693 | 75 | 5,142 | 113 | 10,263 | 273 |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 세부사업명<br>(사업코드)                         | 종료연도별 정산금 미반납액 |    |       |    |       |    |       |    |       |    |       |    |
|-----------------------------------------|----------------|----|-------|----|-------|----|-------|----|-------|----|-------|----|
|                                         | 2020년          |    | 2021년 |    | 2022년 |    | 2023년 |    | 2024년 |    | 합계    |    |
|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br>(R&D)(2134-305)           | 170            | 18 | 182   | 8  | 132   | 9  | 81    | 6  | 158   | 5  | 723   | 46 |
| 산학연협력 신사업 R&D바우처<br>(R&D)(2134-321)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학연 Collabo<br>R&D(R&D)(2151-302)       | 49             | 6  | 28    | 5  | 96    | 7  | 211   | 12 | 20    | 2  | 404   | 32 |
| 중소기업R&D역량제고<br>(R&D)(2134-310)          | -              | -  | -     | -  | 17    | 2  | 96    | 5  | 55    | 2  | 168   | 9  |
|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br>(R&D)(2134-342)     | -              | -  | 189   | 2  | 1     | 1  | -     | -  | -     | -  | 190   | 3  |
| 창업성장기술개발(소<br>특)(R&D)(2134-309)         | -              | -  | -     | -  | 1,007 | 9  | 58    | 3  | 264   | 3  | 1,329 | 18 |
|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기술개발<br>(R&D)(2134-345)       | -              | -  | 12    | 1  | -     | -  | 8     | 3  | -     | -  | 20    | 4  |
|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br>(R&D)(2134-350)       | -              | -  | -     | -  | 6     | 1  | -     | -  | -     | -  | 6     | 1  |
|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br>(R&D)(2134-340)        | -              | -  | -     | -  | 21    | 2  | 11    | 1  | -     | -  | 32    | 3  |
| Tech-Bridge활용상용화기술개발<br>(R&D)(2134-352) | -              | -  | -     | -  | 1     | 1  | 55    | 1  | 184   | 4  | 240   | 6  |
| AI기반 고부가 신제품기술개발<br>(R&D)(2134-341)     | -              | -  | -     | -  | 223   | 2  | -     | -  | -     | -  | 223   | 2  |
| 예비가젤형기술개발<br>(R&D)(2134-346)            | -              | -  | -     | -  | 563   | 3  | 100   | 1  | -     | -  | 663   | 4  |
| 산학협력거점형 플랫폼<br>(R&D)(2151-307)          | -              | -  | -     | -  | 10    | 1  | -     | -  | -     | -  | 10    | 1  |
|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br>발사업(R&D)(2134-318)   | -              | -  | -     | -  | 3     | 1  | -     | -  | -     | -  | 3     | 1  |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소<br>특)(R&D)(2134-303)      | -              | -  | -     | -  | 491   | 2  | 1     | 1  | -     | -  | 492   | 3  |
| 소상공인자영업자를위한생활혁<br>신형기술개발(R&D)(4131-320) | -              | -  | -     | -  | 147   | 1  | -     | -  | -     | -  | 147   | 1  |
|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기술개발<br>(R&D)(2151-306)       | -              | -  | -     | -  | -     | -  | 269   | 6  | -     | -  | 269   | 6  |
| 스마트센서선도프로젝트 기술개<br>발(R&D)(2134-354)     | -              | -  | -     | -  | -     | -  | 218   | 2  | -     | -  | 218   | 2  |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소<br>특)(R&D)(2134-302)       | -              | -  | -     | -  | -     | -  | 97    | 2  | 31    | 1  | 128   | 3  |
| 제조중소기업글로벌역량강화<br>(R&D)(2134-384)        | -              | -  | -     | -  | -     | -  | 130   | 2  | -     | -  | 130   | 2  |
| 스마트서비스ICT솔루션 개발<br>(R&D)(2134-388)      | -              | -  | -     | -  | -     | -  | 34    | 1  | 7     | 2  | 41    | 3  |
|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br>(R&D)(2134-382)          | -              | -  | -     | -  | -     | -  | 264   | 1  | -     | -  | 264   | 1  |
| 현장수요맞춤형방역물품기술개<br>발(R&D)(2134-371)      | -              | -  | -     | -  | -     | -  | 18    | 4  | -     | -  | 18    | 4  |
| 지역특화산업육성<br>+(R&D)(3336-304)            | -              | -  | -     | -  | -     | -  | 315   | 11 | 376   | 4  | 691   | 15 |
| 산업단지대개조지역산업<br>R&D(R&D)(3336-327)       | -              | -  | -     | -  | -     | -  | 3     | 1  | -     | -  | 3     | 1  |

| 세부사업명<br>(사업코드)                       | 종료연도별 정산금 미반납액 |    |       |    |       |     |       |     |        |     |        |     |
|---------------------------------------|----------------|----|-------|----|-------|-----|-------|-----|--------|-----|--------|-----|
|                                       | 2020년          |    | 2021년 |    | 2022년 |     | 2023년 |     | 2024년  |     | 합계     |     |
|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 지역특화산업육성<br>+(R&D)(3336-320)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강기능식품개발 지원사업<br>(R&D)(2134-416)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br>R&BD(R&D)(2151-308)     | -              | -  | -     | -  | -     | -   | 114   | 9   | -      | -   | 114    | 9   |
|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br>지원(R&D)(2134-398)      | -              | -  | -     | -  | -     | -   | -     | -   | 80     | 1   | 80     | 1   |
| 해외원천기술 상용화<br>R&D(R&D)(2134-344)      | -              | -  | -     | -  | -     | -   | -     | -   | 51     | 2   | 51     | 2   |
| 산학연플랫폼협력기술개발사업(<br>R&D)(2151-309)     | -              | -  | -     | -  | -     | -   | -     | -   | 110    | 5   | 110    | 5   |
| 성과공유형 공통기술<br>R&D(R&D)(2134-408)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상공인스마트기술육성(R&D)(4<br>131-326)        | -              | -  | -     | -  | -     | -   | -     | -   | -      | -   | -      | -   |
| 스마트전통시장·상점가<br>R&D지원사업(R&D)(2134-405) | -              | -  | -     | -  | -     | -   | -     | -   | -      | -   | -      | -   |
| 스마트 제조혁신<br>기술개발사업(R&D)(2134-377)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br>기술개발(R&D)(2134-353)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br>기술개발(R&D)(2134-378)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화(R<br>&D)(2163-307)      | -              | -  | -     | -  | -     | -   | 123   | 3   | -      | -   | 123    | 3   |
| 혁신제품고도화기술개발지원사<br>업(R&D)(2134-429)    | -              | -  | -     | -  | -     | -   | -     | -   | -      | -   | -      | -   |
| <b>합 계</b>                            | 1,241          | 49 | 2,128 | 70 | 6,449 | 115 | 7,467 | 188 | 14,150 | 230 | 31,435 | 655 |

주: 2025.12.31.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제재처분에 대한 연구개발비 환수금 발생액 316억 6,800만원 및 제재부가금 발생액 272억 8,100만원 중 2025년 말 까지 미수납된 금액은 각각 환수금 143억 300만원 및 제재부가금 202억 8,100만원 등 총 345억 8,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표 2] 2020~2024년 제재처분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금 미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계               |                 |
|-------------------------------------|-------------|-----------------|-----------------|-----------------|-----------------|---------------|-----------------|-----------------|
| 연도 별 환수결정액<br>(a)                   |             | 9,851           | 10,152          | 4,296           | 4,492           | 2,877         | 31,668          |                 |
| 환수금<br>누적<br>수납액<br>(누적<br>수납<br>률) | 2020        | 3,126<br>(31.7) | [해당없음]          |                 |                 |               | 3,126           |                 |
|                                     | 2021        | 4,630<br>(47.0) |                 |                 |                 |               | 3,991<br>(39.3) | 8,621           |
|                                     | 2022        | 5,530<br>(56.1) |                 |                 |                 |               | 4,762<br>(46.9) | 1,999<br>(46.5) |
|                                     | 2023        | 5,766<br>(58.5) | 5,271<br>(51.9) | 2,146<br>(50.0) | 1,124<br>(25.0) | 14,307        |                 |                 |
|                                     | 2024        | 5,904<br>(59.9) | 5,576<br>(54.9) | 2,352<br>(54.7) | 1,897<br>(42.2) | 171<br>(5.9)  | 15,900          |                 |
|                                     | 2025<br>(b) | 6,958<br>(70.6) | 5,666<br>(55.8) | 2,213<br>(51.5) | 2,076<br>(46.2) | 452<br>(15.7) | 17,365          |                 |
| 미수납 총액<br>(c) = (a)-(b)             |             | 2,893           | 4,486           | 2,083           | 2,416           | 2,425         | 14,303          |                 |

주: 1. 2025.12.31.기준

2. 행정소송 진행 등에 의한 미확정 금액은 환수 결정액에서 제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표 3] 2020~2024년 제재처분에 따라 부과한 제재부가금 미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 2020            | 2021        | 2022       |               | 2023            | 2024            | 계            |            |               |                 |              |
|-----------------------------|-------------|-----------------|-------------|------------|---------------|-----------------|-----------------|--------------|------------|---------------|-----------------|--------------|
| 적용법률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                 |              |            |               |                 |              |
| 연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 (a)           |             | 132             | 65          | 196        | 967           | 11,927          | 13,994          | 27,281       |            |               |                 |              |
| 제재부가금<br>누적 수납액<br>(누적 수납률) | 2020        | 66<br>(50.0)    | (해당없음)      |            |               |                 |                 | 66           |            |               |                 |              |
|                             | 2021        | 71<br>(53.8)    |             |            |               |                 |                 | 17<br>(26.2) | 88         |               |                 |              |
|                             | 2022        | 71<br>(53.8)    |             |            |               |                 |                 | 65<br>(100)  | 0<br>(0.0) | 0<br>(0.0)    | 136             |              |
|                             | 2023        | 71<br>(53.8)    |             |            |               |                 |                 | 65<br>(100)  | 0<br>(0.0) | 162<br>(16.8) | 391<br>(3.3)    | 689          |
|                             | 2024        | 71<br>(53.8)    |             |            |               |                 |                 | 65<br>(100)  | 0<br>(0.0) | 162<br>(16.8) | 2,072<br>(17.4) | 319<br>(2.4) |
|                             | 2025<br>(b) | 71<br>(53.8)    | 65<br>(100) | 0<br>(0.0) | 162<br>(16.8) | 3,720<br>(31.2) | 2,982<br>(21.3) | 7,000        |            |               |                 |              |
| 미수납 총액<br>(c) = (a)-(b)     |             | 61              | 0           | 196        | 805           | 8,207           | 11,012          | 20,281       |            |               |                 |              |

주: 1. 2025.12.31.기준

2. 행정소송 진행 등에 의한 미확정 금액은 환수결정액에서 제외

3.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적용 과제에 부과된 2019~2022년 제재부가금의 경우 직접 수납·징수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후 적용 과제에 대한 2022년 제재부가금부터는 주관·참여기관이 전담기관에 납부하면, 해당 납부액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납·징수하는 것으로 방식을 변경하였음. 동시에 협약위배, 연구결과불량 등 기존 환수금에 포함되었던 항목을 제재부가금으로 분류 변경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2022년~2024년 결산 시정요구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에 대한 정산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해 왔음.<sup>2)</sup>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 집행 기준 및 정산절차에 대한 교육 실시, 출연금·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지급방식 조정, 현장방문점검, 회수계획수립 등 사전·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소기업의 휴·폐업 비율이 높아<sup>3)</sup>, 예금 압류 및 추심 절차 강화 등 환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산금 등의 미수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①출연금·보조금의 집행·정산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의도치 않은 부정집행을 예방하고, ②정기점검을 통한 부실기업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정산금 회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출연금·보조금의 적절한 집행과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정회계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세 부지침」<sup>4)</sup>,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sup>5)</sup>, 「국가연구개

2) 연도별 국회 결산 시정요구 사항

- 2022회계연도 결산: (제도개선) R&D 사업 종료과제 정산 및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
- 2023회계연도 결산: (주의) R&D 관련 제재부가금 징수비목 정정 및 장기미납액 징수 제고
- 2024회계연도 결산: (제도개선) 수탁 R&D 사업 정산금 등 수납 관리 강화 필요

3) '20~'25 R&D 정산회수금 및 환수·제재부가금 미납기업의 휴·폐업 비율 38.3%

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sup>6)</sup> 등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하위법령을 통해 연구개발비 적정 사용을 위한 사전교육, 연구비 사용의 정밀검토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장방문 점검, 부도·폐업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연구개발비 회수 유예 등 개정안과 유사한 시책을 실시 중으로, 개정안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한 연구개발비 집행관리 방안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기술혁신 중소기업 등 관계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법률의 적용을 명확히 하는 의미도 있을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기술혁신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전예방 교육, 컨설팅 등의 기업 안내를 통해 출연금·보조금의 부정사용 및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출연금·보조금 집행의 이상징후 발견 시 지급방식 조정을 통해 문제과제 발생을 방지하며,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휴·폐업 등이 예상되는 경우 납부 유예 및 분납 등 회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산

---

4) 「지정회계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침)

제6조(지정회계기관의 업무범위)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정회계기관이 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담당 연구개발기관의 정산 자문, 교육 등 관련 고객센터 제공

5)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6호)

제25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및 정산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3호)

제85조(연구개발비 회수의 유예)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도·폐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 악화에 처하거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 금액을 제때 반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회수 금액의 반납기한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임.

|       |
|-------|
| 문 의 처 |
|-------|

|               |
|---------------|
| 02) 6788-5467 |
|---------------|